

상수도 요금제도의 개선방안

백 승 천

한국자치경영협회 책임전문위원

I. 물 수요관리정책과 상수도요금

1993년 UN의 국제인구행동연구소 (PAI: Population Action Institute)에서는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였다. 물 부족국가란 국민 1인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이 1,000톤~2,000톤인 국가를 말하는데, 1990년도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사용가능 수자원의 양은 1,470톤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물 소비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물 기근국가”¹⁾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비교적 많은 편이나, 높은 인구밀도로 인하여 1

인당 강수량은 매우 적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량은 1,274mm로 세계 평균(973mm)의 1.3배에 이르나, 1인당 강수량은 연간 2,755톤으로 세계 평균(22,096톤)의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건설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물이 부족(연간 4억톤)하게 되어 2011년에는 연간 20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2>.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공급위주의 수자원관리정책을 추진해왔다. 댐 건설에 의한 공급위주의 수자원정책은, 댐 건설비의 상승과 댐 개발 적지의 감소를

1) “물 기근국가”란 국민 1인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1,000톤 미만인 국가를 말한다.

<표 1> 세계 각국의 강수량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영 국	중 국	캐나다	세계평균
연평균 강수량(mm)	1,274	1,405	982	753	578	318	973
1인당 강수량(톤/년)	2,755	4,227	34,270	3,147	4,446	105,437	22,096

자료 : 수자원편람(1998, 건설교통부 · 한국수자원공사).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반대
대에 부딪치고 있어서 물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상
수도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의 74%정도
로 낮아서 물 소비를 부추기는 현상²⁾을

천만톤)의 13.5%에 해당하는 7억 9천만
톤을 절약³⁾할 계획이다<표 4>.

<표 2> 우리나라의 수자원 수요·공급 전망

구 분	1994년	2001년	2006년	2011년
용수수요(억톤)	301	337	350	367
공급능력(억톤)	325	344	346	347
과 부 족(억톤)	24	7	△4	△20

자료 : 건설교통부, 수자원장기 종합계획

<표 3> 용도별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구 분	전 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육탕1종	육탕2종	전용공업용
상수도요금(원/톤)	395	276	584	790	420	1,272	173
현 실 화 율 (%)	74	52	109	148	79	238	32

자료 : '99지방공기업결산 및 경영분석, 2000, 행정자치부

초래하고 있다<표 3>.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제까지의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수요관리위주의 정책
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절
수유도형 수도요금체계의 도입·절수기
기 및 중수도 설치 확대·노후관 교체
등과 같은 물 절약대책을 추진함으로써,
2006년에는 연간 수돗물 생산량(58억 4

2) 우리나라의 1인 1일 급수량은 395ℓ로, 영국(323ℓ)·프랑스(281ℓ)·덴마크(246ℓ)보다
많은 편이다.

3) 이는 섬진강댐(3억 5천만톤)을 2개 건설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표 4> 정책수단별 물 절약목표

구 분		사업물량	절수목표(천톤/년)	비율(%)
계		-	790,000	100.0
절수기기 설치	소 계	-	290,000	36.7
	주 택	1,163만 가구	250,000	31.6
	영업용 등	11,500개소	40,000	5.1
상수도요금 현실화		2001년까지 현실화	200,000	25.3
노후수도관 교체		27,000km	240,000	30.4
중수도 설치		300개	30,000	3.8
산업체 물 재이용		공업용수 10% 절약	30,000	3.8

자료: 물 절약 종합대책 주요내용, 환경부.

본 연구에서는 물 수요관리정책 중 상수도요금제도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지방상수도공기업을 중심으로 현행 요금제도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II. 지방상수도 운영실태

우리나라의 상수도는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로 구분⁴⁾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1일 생산능력이 15,000톤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상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999년말 현

재 92개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1. 경영성과

<표 5>는 지난 5년간 지방상수도공기업의 경영성과를 요약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전체적으로는 매년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지만, 개별적으로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단체가 많다. 1999년의 경우 지방상수도공기업 전체적으로는 1,76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지만, 92개 단체의 절반이 넘는 47개단체

4) 광역상수도는 건설교통부에서 건설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건설 및 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다.

<표 5> 연도별 경영성과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당기순이익(억원)		811	1,496	1,015	819	1,766
단체 (개)	계	89	90	90	92	92
	당기순이익	44	47	49	46	45
	당기순손실	45	43	41	46	47
영업수지비율(%)		110.0	114.7	110.5	106.9	112.7
경상수지비율(%)		107.0	111.3	107.0	105.3	111.1

자료: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각 연도, 행정자치부.

가 당기순손실을 나타냈다.

둘째, 영업수지비율⁵⁾이 100%를 겨우 상회하는 정도이다. 1999년도의 영업수지비율은 112.7%인데, 이는 영업수익으로는 영업비용을 겨우 충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시설투자나 부채상환에 필요한 재원은 기채 등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셋째, 매년 경상수지비율⁶⁾이 영업수지비율보다 작다. 양 비율의 차이는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경상수지비율이 영업수지비율보

다 작은 것은 영업외수익이 영업외비용보다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급이자의 부담이 크다⁷⁾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재정상태

<표 6>은 지난 5년간 지방상수도공기업의 재정상태를 요약한 것인데, 다음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전체적으로는 부채비율⁸⁾이 40% 미만이므로 재무구조가 매우 건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개별적으로는

5) 영업수지비율은 영업수익을 영업비용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6) 경상수지비율은 경상수익(영업수익+영업외수익)을 경장비용(영업비용+영업외비용)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7) 영업외비용의 대부분은 지급이자이다.

8) 부채비율은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표 6> 연도별 재정상태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부 채 총 액 (억원)		23,172	26,360	31,145	33,671	35,143
자 기 자 본 (억원)		65,546	75,258	83,314	90,222	105,719
부 채 비 율 (%)		35.4	35.0	37.4	37.3	33.2
단체 (개)	계	89	90	90	92	92
	부채비율 100%이하	75	75	74	79	78
	부채비율 100%초과	14	15	16	13	14

자료: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각 연도, 행정자치부

부채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단체도 많다. 부채비율이 100%를 상회한다는 것은 부채총액이 자기자본보다 많다는 것으로, 1999년의 경우에는 92개단체 중 14개단체가 100이상의 부채비율을 나타냈다.

둘째, 지난 5년간 부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재원을 주로 국고보조나 기채 등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재무구조는 점차 악화될 전망이다⁹⁾.

셋째, 부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감소된 것은 부채보다 자기자본이 더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인데, 자기자본 증가의 많은 부분은 재평가적립금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지방상수도공기업에서는 5년마다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때 발생되는 재평가적립금 때문에 자기자본이 증가하고 있다. 만약 재평가적립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¹⁰⁾ 자기자본은 대폭 감소될 것이고, 따라서 부채비율은 상당히 증가될 것이다.

9) 각 단체에서는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익과 같은 자체재원보다는 국고보조나 기채 등 외부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바, 국고지원 등 외부보조가 기대한 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기채에 의존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부채비율은 증가될 것이다.

10) 현행 「기업회계기준」 부칙 제4조에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자산재평가를 인정하고 있다.

Ⅲ. 지방상수도요금의

실태와 문제점

1. 요금수준

『지방공기업법』¹¹⁾에서는 상수도요금의 적정성·형평성·원가보상·기업의 계속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① 요금의 적정성이란 수도물은 인간의 생활에 필수적인 반면 상수도요금은 독점가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성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가격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② 지역간의 형평성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요금은 큰 격차를 보여서는 안된다는 것

이며, ③ 원가보상이란 상수도사업이 독립채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도물을 생산·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상수도요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④ 기업의 계속성이란 상수도요금이 영업비용만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사업확장에 필요한 재원은 차입에 의존하게 되어 이자부담이 누증되고 결국은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건설개량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유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요금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수도 요금수준이 총괄원가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매년 30%이상의 요금인상요인을 나타내고 있다<표 7>.

<표 7> 연도별 요금수준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평 균 요 금(원/톤)	272.1	302.4	316.2	349.1	394.5
총 괄 원 가(원/톤)	375.7	397.6	434.2	489.0	535.3
요금인상요인 (%)	38.1	31.4	37.3	40.1	35.7
요금인상요인 100% 초과 단체수 (개)	15/89	11/90	9/90	16/92	14/92
결손추정액 (억원)	3,975	3,852	4,921	5,563	5,831

자료: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각 연도, 행정자치부.

11) 지방공기업이 징수하는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공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지방공기업법 제 22조 제2항)

1999년에는 톤당 535.3원에 수도물을 생산하여 394.5원에 공급함으로써 연간 5,831억원의 급수손실(요금인상요인 35.7%)이 발생하였으며, 92개단체 중 14개 단체는 100%이상의 요금인상요인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높은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은 물가안정책¹²⁾의 일환으로 상수도요금의 인상을 억제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나, 상수도요금수준이 총괄원가를 보상하지 못함으로써, ① 상수도사업의 경영이 악화되어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수도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었고, ② 수도물의 과다한 소비로 수급차질이 발생한 경우도 있으며, ③ 상수도사업의 경영손실을 재정지원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나고, ④ 상수도사업 경영진에게 경영

합리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¹³⁾을 노정시켰다.

2. 요금체계

「'97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지침」에서 는 “구경별정액요금제+체중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아직도 기본요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첫째, 기본요금제는 국민의 건강과 위생을 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최소한의 수도물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채택된 제도이나, ①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은 수도물에 대해서도 요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¹⁴⁾하고, ② 수도물을 기본사용량까지 필요이상으로 사용¹⁵⁾함으로써 절수정책에 역행할 우려가 있으며, ③ 기본사용량을 설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12) 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상수도요금이 도시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타 공공요금에 비해 월등히 낮은 실정이다. 4인 가족의 월 가계비가 1,316,200원일 때, 상수도요금은 7,200원으로 0.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대중교통비는 41,400원으로 3.2%, 통신요금은 44,800원으로 3.4%나 된다.

13) 상수도공기업의 관리자들은 요금의 현실화가 없는 경영개선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열심히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14) 가정용의 경우 월 10톤까지가 기본요금구간이므로 3톤을 사용한 수용가도 10톤을 사용한 수용가와 동일한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3톤을 사용한 수용가는 실제로는 사용하지도 않은 7톤에 대해서도 요금을 부담한 셈이 된다.

15) 가정용의 경우 월 10톤까지가 기본요금구간이므로 여차피 기본요금을 부담할 바에는 가능하면 10톤을 사용하고 기본요금을 부담하려는 동기가 유발되고, 따라서 필요이상으로 수도물을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없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④ 조사결과¹⁶⁾에 의하면 대부분의 수용가가 기본사용량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서 기본요금제를 채택하는 근거가 희석되었다.

둘째, 체증요금제는 수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절수를 유도하고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나, ① 수도물을 많이 사용하는 수용가의 요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므로,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물의 다량소비를 억제한다면 생산시설의 가동율이 떨어져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②

가정용이외의 경우에는 수도물이 중간재로 제품원가를 구성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므로,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③ 체증요금 구간별 요금격차가 과도¹⁷⁾하나 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하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업종간의 요금격차가 너무 큰 것도 문제이다. <표 8>에 나타난 것과 같이 1999년의 경우 영업용은 가정용의 3배, 옥탕2종은 가정용의 4.6배를 부과하고 있어서 업종간 요금수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표 8> 업종별 요금현황(1999)

구 분	평균(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옥탕1종	옥탕2종	전 용 공업용	기타
요금(원)	393.6 (1.0)	276.0 (0.7)	583.8 (1.5)	790.3 (2.0)	420.4 (1.1)	1,272.0 (3.2)	173.2 (0.4)	382.4 (1.0)
조정량 (백만톤)	4,158 (100.0)	2,562 (61.6)	558 (13.4)	629 (15.1)	92 (2.2)	3 (0.1)	266 (6.4)	48 (1.2)

자료 : '99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2000. 행정자치부.

16) 1995년 10월 현재 전국 57개 자치단체의 급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본구간에서 사용하는 수용가의 비중은 가정용 11.81%, 영업용 7.15%, 업무용 6.87%, 옥탕1종 6.77%, 옥탕2종 4.8%로 나타났다.

17) 1996. 3. 31 현재 전국 167개 상수도사업단체의 요금체계를 분석한 결과, 옥탕1종의 경우 기본구간을 초과하자마자 기본구간 요금의 3.5배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요금제도 개선방안

1. 총괄원가계산서의 조정

상수도사업에서 총괄원가는 영업비용과 자본비용 및 영업외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기타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다.

- ① 영업비용: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원·정수구입비, 급수장치개량비,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② 자본비용: 요금기저¹⁸⁾×공정투자보수율(9%)
 - ③ 영업외비용: 지급이자를 제외한 영업외비용
 - ④ 기타영업수익: 수수료수입, 급수장치손료수익 등
 - ⑤ 영업외수익: 수입이자 및 배당금, 공공용수대 등 타회계부담금수입
- 현재의 총괄원가계산서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원·정수구입비: 현금지출을 수반하는 영업비용 중 유일하게 1998년도 다 증가되었는데¹⁹⁾, 이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정수요금을 인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역상수도의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지방상수도에서 요금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요금기저: 요금기저는 순가동설비자산과 운전자금을 합하여 산정하고, 순가동설비자산은 총가동설비자산²⁰⁾에서 시설분담금누계액과 공사부담금누계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상수도사업의 시설투자는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차입자금에 의존하고 있어서 건설기간 중에도 지급이자가 발생하며, 시설이 완공되는 회계연도에는 일시에 가동설비자

18) 요금기저(Rate Base)란 적정투자보수액(자본비용)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재산가치로, 순가동설비자산과 운전자금을 합하여 산정한다. 순가동설비자산은 총가동설비자산에서 시설분담금누계액과 공사부담금누계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운전자금은 현금지출 영업비용에 2/12를 곱하여 산출한다.

19) 1998년에는 92개 상수도공기업에서 289,099백만원의 원·정수구입비가 발생(톤당 73원)하였으나, 1999년에는 361,991백만원(톤당 87원)의 원·정수구입비가 발생하였다.

20) 여기서 고정자산이 아니라 '가동설비자산'을 사용하는 까닭은, 현재 건설중인 비가동설비자산은 수도물의 생산·공급에 실제로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설이 완공되면(즉, 가동설비자산이 되면) 그 시설로부터 급수혜택을 받는 수용자에게 요금을 부담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수익자부담원칙).

산에 계상되어 갑자기 요금인상요인이 증가하는 사태가 발생²¹⁾된다. 따라서 광역상수도요금이나 전력요금을 산정하는 것처럼, 지방상수도의 총괄원가계산에서도 건설중인 자산의 50%정도를 요금기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③ 영업외수익·비용: 총괄원가 계산시 영업외비용은 가산하고 영업외수익은 차감하고 있어서, 영업외수익인 수입이자에 따라 총괄원가가 변하고 있다. 요컨대,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예치한 회계연도에는 많은 이자수익으로 인하여 총괄원가가 감소하고, 자금을 사업에 투자한 회계연도에는 적은 이자수익으로 인하여 총괄원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총괄원가계산시 영업외수익과 비용항목을 고려하지 않거나, 이들을 고려하려면 특별이익과 특별손실항목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 총괄원가 산정기간의 확대

지방상수도에서는 전년도에 결산결과를 토대로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즉, 전년도에 총괄원가계산서에 나타난 요금인상요인을 기초로 요금을 조정함으로써 요금인상요인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으며²²⁾, 매년 총괄원가와 요금인상요인의 심하게 변함으로써 장기적인 요금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과거의 실적에 의한 원가계산²³⁾이기 때문에, 미래의 투자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요금조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5년 정도의 장기평균비용에 의하여 총괄원가를 산정하는 등, 요금산정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²⁴⁾.

3. 업종의 단순화

지방상수도에서는 업종별요금체계를

- 21) 건설중인 자산이 완성되는 회계연도에는 추가동설비자산의 증가→순가동설비자산의 증가→요금기저의 증가→자본비용의 증가→총괄원가의 증가→요금인상요인의 증가가 초래된다.
22) 예컨대, 전년도 총괄원가계산서의 요금인상요인이 30%인 경우, 요금인상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요금을 30%인상하더라도 금년도에 요금인상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모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이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23) 이를 사후원가계산 또는 실제원가계산이라고 한다.
24) 실제로 하수도요금의 경우에는 요금산정기간을 2~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하수도요금 산정지침, 환경부, 1992).

채택하여, 가정용·업무용·영업용·옥탕1종·옥탕2종·전용공업용 등 6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업태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종별요금체계를 채택함으로써, ① 업종과 업태의 분류 및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 생활양식의 변화와 직종의 세분화에 따라 업태의 종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업태를 업종에 정확하게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며, 수시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 ② 업종별로 차등요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업종별 요금 인상율을 자의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가격안정성이 훼손되고, 업종간 용도유용으로 부정급수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정용·비가정용 또는 가정용·산업용·영업용 등 2~3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일반용·공중목욕탕용 등 2~3개업종으로 단순화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6개업종을 가정용·비가정용으로 구분하거나 가정용·영업

용·산업용으로 구분하는 등 2~3개업종으로 통폐합하는 방안²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체중요금구간의 축소

지방상수도 요금은 업종별로 2~6단계로 되어 있는 체중요금구간을 채택하고 있는데, 수돗물을 사용하는 목적과 절수효과 및 사용량 분포를 고려하여 이를 재조정²⁶⁾할 필요가 있다.

① 가정용: 10톤 간격으로 6단계의 체중요금구간이 있으나, 월 10톤이상 30톤미만을 사용하는 수용가가 전체 사용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0톤/월까지를 1구간으로 통합하고 이 구간의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월 10톤미만을 사용하는 수용가는 영세민이나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많을 것이므로 평균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²⁷⁾. 한편, 30톤/월이상은 단일요금제로 하거나 30톤~50톤, 50톤이상

25)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가정용·대중목욕탕용·업무용·영업용·전용공업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26) 미국 뉴욕시의 경우에는 업종별·체중요금 구간별 구분없이 단일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용이외의 업종에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7) 서울특별시에서는 30톤까지를 1구간으로 하되(톤당 270원), 10톤 미만을 사용하는 수용가에 게는 톤당 190원을 적용하고 있다.

등 2구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② 나머지 업종: 가정용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단일요금제로의 변경이 바람직하다. 단일요금제는 수도물 사용량과는 관계없이 톤당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요금변동시 그에 따른 수요변동을 파악하기 수월하고, 체증요금제에서와 같은 구간별 인상율에 대한 시비가 없을 것이며, 체증요금구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단일요금제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면 업종별로 체증요금구간을 통합함으로써 현재보다는 축소된 2~3단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결산 및 경영분석, 각 연도.
- 행정자치부·지방자치경영협회, 지방공기업관련 규정집, 1999.
- 건설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1997-2011), 1996.
-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편람, 1998.
- 백승천, 지방상수도요금의 현실화와 물 절약방안, 2000.
- 환경부, 물 절약 종합대책, 2000.
- _____, 상수도요금제도 개선방향, 2000.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집, 2000.
- 박인주의 2, 기업회계기준해설, 무역경영사, 1999. ☺

시사용어 해설

• 구즈 에그(Goose Egg)

야구경기에서 양팀이 점수를 내지 못해 득점판에 0의 행렬이 계속되는 경우를 “구즈 에그”라고 한다.

- 편집 실 -